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405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변론 종결 2020. 7. 14.

판결 선고 2020. 8. 18.

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소2084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 1) 피고가 B 주식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49226)에서 원고에 대하여 소장 부분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4. 6. 25. "원고는 피고에게 570,872,534원과 그 중 362,715,764원에 대하여는 1999. 5. 25.부터, 203,269,389원에 대하여는 1999. 11. 29.부터 각 2004. 4. 23.까지 연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정본도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1998. 9. 3.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및 피고의 1998. 9. 30.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해서 원고가 그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를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나. 피고의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 1) 피고의 신청으로 2013. 9. 6.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중소기업은행, G 주식회사, 청구채권 법인격 부인론에 기한 구상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법원 2013카단5140).
- 2) 피고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3가단107383). 피고는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 면탈목적으로 이전에 원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위 회사들을 설립하였으므로, 위 회사들은 C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위소송에서 2014. 11. 7.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5. 8. 19.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시효연장을 위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B 주식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3242)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추완항소

1)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원고 간 위 구상금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다.

2) 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8329)에서 2015. 5.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와 원고 간 위 구상금 사건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주채무가 소멸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마.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의 취하

원고 추완항소가 기각되어 피고와 원고 간 위 구상금 사건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3242)를 2015. 12.경 취하하였다.

바. 원고의 추심권자인 피고의 배당금 수령

이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2. 19. 실제 배당할 금액 1,445,153,281원에 대하여 2순위로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I 호, J호 각 300만 원)을 원고의 추심권자인 피고 앞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후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내세워 추심명령을 받아 위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추심하였는바, ① 원고가 공시송달을 받은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와 원고 간 위 구상금 사건의 제1심판결은 무효이고, ② 관련 소송(위 채권가압류, 피고의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에서 피고가 이를 취하하거나 청구 기각된 이상, 피고와 원고 간 위 구상금 사건의 제1심판결은 그 효력이 없거나 그 판결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6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에게 소장 부분,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건에 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가 피고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하거나 제기한 가압류나 구상금 청구의 소는 모두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내세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에 기한 원고의 지급책임을 위 회사들에 대해서 추급하기 위해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해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가압류를 취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아니하고, ④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하였던 소의 이익이 없어져 그 소를 취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확정된 제1심판결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 판결금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정문성, 판사 조우연